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강화와 향후의 과제

Improvement of Nuclear Liability System and Remaining Issues Thereof

김상원, 장군현, 오병주, 유선오, 강석철, 김효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국내외적인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강화 경향과 궤를 같이하여 2001년에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제도개선 작업의 완결과 대북경수로관련 손해 배상의정서 문제의 해결이 손해배상제도 관련 현안이다.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는 CSC에 가입이 필요한 바, 이 경우 CSC 가입의 방법, 필요한 국내 입법조치사항, 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 문제 등이 올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002년 정기국회에 비준안 상정을 목표로 CS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Abstract

To keep in line with the world-wide tendency to strengthen the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system both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the Nuclear Liability Act and the Act on Indemnity Agreement for Nuclear Liability have been amended in 2001. The pending issues are the comple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nuclear liability system and protocol between the KEDO and the DPRK for the nuclear liability and indemnification thereof. Since adherence to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CSC) is required to strike out the pending issues, the method to become a party to the CSC, necessary implementation enactment, the person to bear the contribution to the fund of CSC should be studied carefully this year. The Government is now carrying out a political study, to lay a bill of ratification for the adherence to the CSC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a regular session this year.

1. 배경

1950년대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정비를 꾀하였다.

각국의 국내법이 원자력산업에 요구하는 안전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엄격한 것이어서 원자력 시설의 사고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만일의 사고가 있는 경우 원자력손해는 환경오염 범위의 광역성, 피해의 대규모성 내지 거액성, 인적손해의 특수성(만발성 등), 입증의 곤란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법만에 의하여는 피해자의 합리적 구제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법에 특칙을 정하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제도가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원자력 개발이 시작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상된 제도(미국의 Price-Anderson 법,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이며

둘째, 이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법이 제정됨과 아울러 국제협약도 동시에 정비되었으며

셋째, 이 제도를 내용적으로 보면 피해자 보호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의 엄격책임 부담, 원자력사업자에로의 책임집중, 의무적 배상조치, 국가에 의한 원조 또는 보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국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국제적 관점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원자력사고가 있는 경우 시설소재지, 사고발생지, 손해발생지, 관련자의 국적 등 여러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와加害자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등 섭외적 요소를 가진 원자력손해를 다루는 것이다. 실제 어느 한 국가의 사고가 인접국의 주민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에 피해를 미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고 또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국제협약은, 이러한 국제적 책임문제를 책임있는 사업자(私人)와 피해자(私人)의 관계, 즉 사인간(私人間)의 법률문제로서 섭외적 법률관계 내지 국제 민사소송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의 책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제도를 국내적으로 입법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책임이행을 보장하는 부차적인 면에서의 것이다.

3. 관련 국제협약

가. 개요 및 기본구조

국경을 넘어 원자력손해가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처리를 위한 국제조약이 일찍부터 마련되었다.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OECD/NEA가 주관하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P/C) 체제와 IAEA가 주관하는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V/C) 체제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조약들이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전체적인 기본 열개를 형성하고 있다.

P/C와 V/C에는 각각 국내법상의 책임한도를 보충하는 브뤼셀보충협약(1974년 발효) 및 보충배상협약(1997 서명개방, 미발효)이 있고, 또 P/C 체제와 V/C 체제를 연결하는 Joint Protocol 이 있다.

P/C와 V/C의 기본구조는 크게 2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각국의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것
둘째, 국경을 넘은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처리의 원칙을 설정할 것
이 그것이다.

전자를 위하여는 원자력사업자의 엄격책임, 책임의 집중, 구상권의 제한, 강제적 손해배상조치 의무, 정부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를 위하여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P/C 체제

1) P/C (The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는

- 1960. 7. 29에 채택되어 1968. 4.에 발효되었고
- 기탁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장이며
- V/C와의 조화를 위하여 1964년 개정되고(1968. 4. 1. 발효), 계산단위를 SDR로 바꾸기 위하여 1982년 다시 개정되었다(1988. 10. 17. 발효).

2) 브륄셀 보충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은

- 1963년 사업자의 책임액과 시설소재지국의 공적 자금으로 배상한 후에도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 체약국의 사후 각출로 125백만 SDR 까지 추가 보상하도록 하는 협약으로 체결되었으며(1974. 12. 4. 발효),
- 이 보충협약은 V/C와의 조화를 위하여 1964년 개정되었고(1974. 12. 4. 발효), 체약국의 각출에 의한 보상액 전체금액은 1982년 300백만 SDR로 개정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3) P/C의 내용

가) 현황

P/C 가맹국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등 14개국이며, 브륄셀보충협약(소위 파리보충협약)의 가맹국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1개국이다.

나) 내용

(1)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제3조 (a)에서 손해가 시설에서 원자력사고 또는 시설로부터 방출된 해물질이 관련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원자력시설의 운전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책임의 집중에 관하여는 제6조 (a)에서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 협약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운전자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업참여자(예를 들면, 용역제공자, 물품납품자 등)은 책임에서 해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면책사유는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운전자는 전투행위, 적대행위, 내전, 반란에 의한 원자력사고 또는 원자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유한책임은 제7조 (a), (b)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총액은 1사고당 500만 SDR이라고 하는 최저책임한도액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집행이사회의 최저한도액 권고안은 1억5000

만 SDR이다(Tier I).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넘는 손해는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1억7500만 SDR까지 전보되어야 한다(Tier II). 17500만 SDR을 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브뤼셀보충배상협약 체약국이 각출한 금액에서 추가로 125000만 SDR까지 배상한다(Tier III).

따라서 P/C 당사국 중 브뤼셀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Tier I, II, III 으로 전보되는 손해배상총액은 3억 SDR이 된다.

(2) 정부의 지원 · 보상

제15조 (a), (b)에서 체약국은 배상금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경을 넘는 손해의 처리

○ 제13조 (a), (b)에서 원칙적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된 영역의 체약국의 법원만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과, 원자력사고가 체약국의 영역 외에서 발생된 경우 또는 원자력사고의 장소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재판관할권은 책임을 질 사업자의 원자력시설이 영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원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준거법에 관하여는 제14조 (b)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국내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 개정추이

P/C는 현재 OECD/NEA 주도로 각국 정부의 전문가그룹에서 개정을 위한 작업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머지 않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 V/C 체제

1) V/C (The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는

- 1963. 5. 21 채택되어 1977. 11 발효되었고
- 기탁처는 IAEA 사무국장이며
- 1997. 9. 29. 최저배상책임한도 인상, 원자력손해의 범위확대, 면책사유 축소, 인적 손해의 소멸시효 연장 등을 위하여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어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2002. 2. 5. 현재 15개국 서명, 4 개국 비준).

2) V/C의 내용

가) 현황

IAEA의 비엔나협약, 즉 “원자력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맹국은 2002. 2. 5. 현재 33개국이다.

나) 내용

- 기본구조와 무한책임, 책임의 집중, 강제적배상조치 의무, 면책사유의 제한, 국가에 의한 지원, 국경을 넘은 손해의 관할권, 준거법 등기본적으로 P/C와 유사하다.
- 책임한도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설소재지국은 운전자의 책임을 원자력사고 1건당 500만 US\$¹⁾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 소위 태환달러 또는 금달러(Sterling)로서 현재의 미화로 US\$ 4000 으로 추산됨. 이는 65년 순금 1온스가 35 금달러(Sterling)이며, 현재의 금가는 약280달러(US\$)이므로, 1 금달러 = 8 달러로 가정한 것임.

1997년의 개정의정서에서는 최저 책임한도액을 3억 SDR로 인상하였는데 의정서 발효일로부터 15년간은 1억 SDR 이상의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도기간을 인정하였다.

○ 원자력사업자의 강제적 손해배상조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방법, 손해배상조치 금액은 국내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협약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다.

3) 1963년 V/C와 개정의정서의 비교

1963년 V/C와 1997년 개정의정서를 비교하면 표 5.2.1과 같다.

표 1. '63년 V/C와 '97년 개정V/C 비교

| 항 목 | '63년 V/C | '97년 V/C |
|-----------|---|---|
| 최저 책임한도액 | USS 500만 | 3억 SDR |
| 원자력손해의 개념 | - 사망, 신체 상해 - 재산의 멸실 훼손 ¹⁾ | - 사망, 신체상해 - 재산의 멸실 훼손 - 환경손해 (환경관련 일실 이익, 환경복구비용) - 예방조치 비용 |
| 지리적 적용범위 | - 규정 없음 ²⁾ | - 비체약국내 발생 원자력손해 적용 명시 |
| 물적 적용범위 | - 규정 없음 | - 비평화적 시설에 적용 않음 |
| 면책사유 | - 전쟁등 적대행위 - 중대한 천재지변 | - 전쟁 등 적대행위 (천재지변 삭제) |
| 소멸시효 | - 10년 - 손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³⁾ | - 인적손해 30년; 기타 손해는 기타 10년 - 손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¹⁾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됨

²⁾ 체약국 영역내 및 공해상 발생 손해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임

³⁾ discovery rule

4) 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은

가) 1997. 9. 29. 채택되어 서명 개방되었다(2000. 11. 14. 현재 13개국 서명, 3 개국 비준).

나) 협약의 의의

○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체약국 상호간에 일정한 방식으로 약정된 분담금을 각출하여 상기한 초과손해를 전보하는 협약으로 P/C의 기준 브뤼셀 보충기금협약과 유사하다.

다) 제정경위

○ '86. 4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손해배상협약체제상 문제가 제기되자

○ '90 IAEA 주관으로 비엔나협약 개정과 보충기금협약 제정을 위한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f Nuclear Liability)가 소집되었으며, 이 상설위원회는 '97. 4 월까지 총 18차례의 상설위원회를 통하여 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와 보충기금협약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 이 최종안은 '97. 9.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서명개방되었다.

라) 보충기금협약 주요내용

○ 가입요건은

- 비엔나협약 또는 파리협약 가입국이거나
- 보충기금협약 부속서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
일 것이 요구된다.

○ 체약국 기금 분담금

체약국의 기금분담액은 아래 2개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 1 MWth(1 Unit)당 300 SDR을 곱한 금액
- 위 총액(모든 체약국) × 10% × (해당국가 UN 분담률)/(모든 체약국의 UN 분담률 합계)

※ 사고가 있을 경우 우리 부담은 현재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약 1200만불로 추산됨

○ 분담금 각출

- 사고 발생후 소정절차에 따라 산정·통보된 분담금을 각출하는 방식이며, 사전에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다.

○ 발효요건

- 5개국 이상이 비준, 가입한 날로부터 후 90일 경과시에 발효하며 다만, 비준·가입국의 시설용량 합계가 40만 Unit 이상이어야 한다.

라. 양대 협약체제의 비교

1) 기본구조와 목적

기본구조와 목적은 P/C와 V/C의 양 체제가 유사하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면, P/C는 가맹 대상국이 OECD 가맹국이라는 일정 수준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 제국에 한정되어 있어 손해배상책임액은 V/C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97년 개정 V/C 이전). 원자력사고시의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미리 확보하게 하는 체약국의 손해배상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브뤼셀보충협약에 있어서는 가맹국간의 사후적 상호부조에 의한 배상조치를 채택하여 손해배상 책임금액을 대폭 인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P/C는 균질의, 수준 높은, 상호 제휴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약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V/C는 국제연합에 가맹하고 있는 세계 전지역의 각국이 가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조치는 요구되나 그 금액에 있어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는 등 대다수의 국가의 가맹이 용이하도록 파리협약에 비하여 규정이 약간 완화되어 있다.

2) 협약의 보편성

협약으로서의 보편성 관점에서 보면, 우선 P/C에는 OECD 가맹국 중 14개국이 가맹하고 있는데, 이들 14개국은 OECD 가맹국의 협약이라고는 하나, 모두가 유럽대륙 국가들이므로 현재 P/C는 결과적으로는 유럽제국의 협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V/C에는 33개국이 가맹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발전도상국이다. 세계 주요 원자력 개발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스웨덴은 파리협약에 가맹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카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어느 협약에도 가맹하고 있

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국제협약 하에 있는 세계 원자력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시설 기수(1996년 3월 시점에서 약 420기)로 보면, 파리협약하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약 34%, 비엔나협약하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약 6%로서 양 협약을 합하여 약 40%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이 되고 있는 세계 원자력시설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 협약은 다 같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양협약 체제의 주요 내용을 단순화하여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비교

| | 파리 협약 | (개정) 비엔나협약 | 비 고 |
|--------|---|---|-------------------------------|
| 채택, 발효 | 1960년 채택, 1968년 발효 | 원협약: 1963 채택, 1977 발효 | 개정의정서 : 서명개방 |
| 대상국가 | OECD가맹국(현재 14개국) | UN가입국 (32개국) | |
| 보유 원자로 | 전세계 보유기수의 34% | 전세계 보유기수의 6% | |
| 책임의 집중 | 시설운영자에 집중 | 시설운영자에 집중 | 구상권의 제한 |
| 면책사유 | • 전쟁, 내란 등 적대행위 • 비상하게 거대한 자연재해 | 전쟁, 내란 등 적대행위 | 개정 V/C에서 천재지변 제외 |
| 유한책임 | • 사고당 500만 SDR 한도의 사업 자책임(권고액 1억5000만 SDR) • 공적자금: 500만 초과 1억7500만 SDR • 보충배상협약: 3억 SDR까지 | • 사고당 3억 SDR • 보충배상협약에 의 한 3억 SDR | 개정협약에서 인상함. 종전은 500만 달러 |
| 손해배상조치 | • 보험 등 • 상기 유한책임액과 동 | • 보험 등 • 체약국 국내법 규정 | |
| 국가의 지원 | 배상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치 가능 | • 책임제한액과 배상 조치액의 차액 보상 | |
| 재판관할권 |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지국 기타 시설소재지국 | (좌 동) | |
| 준거법 | 재판관할권을 가진 범위의 국내 법 | (좌 동) | |
| 무차별적용 | 국적, 주소 여하와 무관하게 무 차별적인 국내법 적용 | (좌 동) | |
| 공통점 | ○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함 (사업자의 책임, 배 상조치의무, 정부의 지원·보상) ○ 월경손해에 대한 배상처리의 범위 설정 (재판관할권, 준거법) | | |

마. 공동의정서(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 공동의정서는 1988. 9. 21 채택되어 1992. 4. 27. 발효되었으며
- 체르노빌 사고 이후, P/C와 V/C 양 협약을 연결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공동의정서이다. 이 공동의정서에 따르면 어느 한 협약의 당사국은 다른

협약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그 다른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되도록 함으로써, P/C나 V/C 적용의 보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4. 우리 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가. 개관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도 P/C나 V/C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이며, 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하고, 면책사유나 구상권의 인정은 매우 제한된다. 또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배상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지원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나. 법제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제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 각각 1969년과 1975년에 제정되어 있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손해의 개념 구체화, 책임의 한도 설정, 배상조치액의 인상, 인적손해의 시효기간 연장, 97년의 개정 V/C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1. 1. 16.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배상조치액은 법상 규정된 상한선(3억SDR)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인 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배상조치 의무 수준은 500억원이다.

표 3. 손해배상법 주요 개정내용

| 항 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적용 범위 | 규정 없음 (한국영토 내에 적용) |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
| 상호주의 | 규정 없음 | 외국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 |
| 손해의 개념 | 손해 종류 열거 없음 | 환경손해, 방재 조치비용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열거 |
| 외국원자력선, 폐기시설 | 배상조치의무 없음 | 배상조치 의무 신설 |
| 면책사유 | 심대한 천재지변 및 전쟁 유사사변 | 전쟁 유사 사변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반란 등) |
| 배상책임한도 | 규정 없음 (무한책임) | 3억SDR로 제한 |
| 배상조치액 | 90억원 내에서 시행령이 범위를 정하고 그 한도에서 과기부장관 이 승인하는 금액 | 3억 SDR 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 하는 금액. 시행령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증액 예 정(현행 시행령상 원전은 500억원) |
| 소멸시효 | 규정 없음 (민법에 따라 사고로 부터 10년) | 인적손해에 관하여는 30년 |
| 기 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의 조항중 필요한 수정제조물책임법 적용 제외 등 |

우리 원자력손해배상 체제상 특이한 점으로 ‘원자력손해배상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정한 강제적 손해배상조치의 하나인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업자가 배상조치를 함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거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과 보상계약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상계약은 책임보험의 전보(填補)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손해를 전보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보상계약은 책임보험 계약과 함께 그 체결이 강제되고 있는데(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 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부하고 정부는 일정한 범위의 원자력 사고에 관한 위험을 담보한다. 보상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

둘째, 해일·홍수·폭풍우 또는 낙뢰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셋째, 책임보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5.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86. 4.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하여 왔고, 또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자국의 손해배상제도를 새로이 만들거나 강화하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01. 1. 16. 관련법을 개정하여 배상조치 액 현실화 등 개정 V/C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한편, 2002. 3. 현재 상술한 개정 V/C는 15개국 서명과 4개국 비준, CSC는 13개국 서명과 3개국 비준에 머물러 아직 발효하지 못하였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다.

1)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보충배상협약의 가입을 추진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사업자가 3억 SDR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그 초과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아니하고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에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하거나 국내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개선작업을 완결한다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다.

둘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자력손해배상의 정서의 체결이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는 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주계약에 의하면 이 원자력손해배상의 정서를 2003. 9. 까지 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품납입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walk-away)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KEDO 집행이사국은 보충배상협약(CSC)의 가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는 집행이사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도 가입하여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적정한 수준의 손해배상제도 수립을 북한에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국가에서도 먼저 제도를 마련하여야만 설득력 있는 요구가 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2) 타국의 동향

미국에서도 대통령 재가 후 의회에 CSC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일본에서는 V/C 개정의정서 채택 후 바로 1999년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을 통하여 배상조치액을 600억 엔으

로 인상하여 등 가입조건을 갖추는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 원자력위원회도 개정 V/C 및 CSC 가입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2002년 하반기나 2003년 상반기에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향후 추진과제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개선작업의 완결과 대북경수로관련 손해배상의정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CSC에 가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CSC 가입의 방법, 필요한 국내 입법조치사항, 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정부에서는 정책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002년 정기 국회에 비준안 상정을 목표로 CS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개선 방안연구, 1998. 3.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1995. 12.
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손해배상자료집, 1997. 7
4.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1998. 12.
5. 박기갑,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 삼우사, 2001. 3.
6. Boulanenkova, V.,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 Presentation at the IAEA Training Workshop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for Governing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Radiological Emergencies for Countries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OECD Nuclear Energy Agency, Vienna, 22 -26 November, 1999.
7. OECD/NEA, Paris Convention: Decisions, Recommendations, Interpretations, 1984.
8. OECD Nuclear Energy Agenc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an International Overview), Paris, 1994.
9. OECD, Exposé des Motifs of the Paris Convention (Approved by the OECD Council on 16th November, 1982 and revised on 1st September, 1988).
10. Reyners, P.,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 presentation at the same workshop as referred to in reference 6 above.